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0 - 6 호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allnew@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 1. 31.

발 의 자 : 김귀근,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이우천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 군포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동물복지계획 등의 수립에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동물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12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 ~ 제22조)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 제25조)
- 반려동물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

3.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수의사법
- 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존중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군포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

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군포시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군포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정책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 및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군포시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제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척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단,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동물을 말한다. 이하 “유기동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등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고하고 개체관리카드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 등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 등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③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 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군포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으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청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

보호센터 등에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동물의 등록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 항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4.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5.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 각 100분의 50
6.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복지 향상 및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4.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①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수의사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술 전·후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

② 수술 후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25조(길고양이 방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포획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1. 미성숙 2kg 미만이거나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성한 개체

②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 여부를 확인하여 포획한 주변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길고양이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보호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입
을 알 수 있도록 귀표 또는 이각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
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문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일시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과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제20조 관련)

1. 산출 계산식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 × 총 보호기간

※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은 도시화·비도시화 지역 등 군포시 여건(실정)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축종별(개, 고양이 등), 크기별(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호비용 산출은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을 토대로 산정한다.

2.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

가. 일반 관리기준

1)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	-	해당동물의 상태에 따라 보호센터의 장이 정함

2) 인건비

- 가) 포획비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나) 보호·관리비(1마리/1일)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3) 일반운영비는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필요한 물품 금액 등으로 군포시장 또는 군포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포시장 또는 군포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치료비

- 1)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의 진료수가에 따른다.
- 2)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포시장 또는 군포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치료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비용

- 1) 수송비는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 2)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는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 3) 사체처리비는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른다.
-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